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1 금융분야

1]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①신규 자금지원 ②유동화 지원(P-CBO, 회사채·CP 차환 발행) ③상생특별보증(자동차부품기업)이 지원됩니다.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1] 신규자금 지원

□ (산은)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중견기업 최대 500억원, 중소기업 최대 2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기한 전 상환수수료 면제
- 우대조건 : 최대 0.9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자금 지원기간 : 3년 이내

□ (수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우대 조건
운영자금지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 중소기업 0.5%p 중견 0.3%p
긴급경영자금 지원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기업 0.5%p 중견 0.3%p
수출실적 기반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보증료 우대 : 중소기업 0.25%p 중견 0.15%p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협력업체 추가 등 협의 중

- 지원대상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협력업체로, 원청 기업·관계부처가 선정한 중견·중소기업
 - ※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항공제조, 정유, 석유화학
- 지원대상 선정여부 : 원청기업 및 기존 거래은행에 지정여부 확인
 -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기업, 수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 ※ 복수은행을 통한 대출 불가
- 자금용도 : 운영자금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불가)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외 추가로 한도를 부여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은행별 한도 소진 기업도 이용가능
 - ※ 다만, 금융부채 연체, 세금체납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화된 기업은 제외

[참고] 코로나 19 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 예시

- 금융부채 연체, 조세 체납
- 완전자본잠식
- 최근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기간 중 최소 1회 당기순이익 시현 필요)
- 법인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청산·해산·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등 구조조정 절차 개시
- 어음, 수표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 대출기관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

- 대출기간 : 2년 (1년차 20%, 만기시 80% 분할상환)
- 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고정금리

□ (수은) 자동차부품기업 해외법인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법인
 - ※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만 가능
- 지원내용 :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해외공장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담보로 대출
 - 부품업체의 현지법인은 통상 모기업(부품업체) 연대보증을 통해 국내은행 대출이 가능했으나, 수은의 해외법인을 통해 부품업체 해외법인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도록 추진

2 유동성 지원

□ (신보) 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중견기업
- 한도 : 중견기업 35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 (신보) 코로나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 중견기업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
※ 계열한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

※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 중 신보 내부 심사를 거쳐 편입이 결정되며,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 상담·신청 → 신평사 회사채 등급 평가** → 보증심사 → 보증승인

**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 발행스케줄(예정)

신청기한	7/17	8/21	9/22	10/23	11/13
발행일	8/21	9/25	10/30	11/27	12/18

※ 발행조건 : 만기 3년, 고정금리, All-in-cost*

* All-in-cost : (대기업) 개별(등급) 민평금리 + 후순위채 1%(年)

(중견기업) 신보 내부기준에 의한 금리 + 후순위채 0.5~1.3%(年)

«중견기업 조달비용 예시(2020. 8. 3.기준)»

(단위 : %)

회사채등급	A- ↑	BBB+	BBB	BBB-	BB+	BB	BB-
쿠폰금리(①)	1.800	1.900	2.000	2.200	2.700	3.150	3.550
후순위채(②)	0.500	0.600	0.600	0.600	0.800	1.100	1.300
조달비용(①+②)	2.300	2.500	2.600	2.800	3.500	4.250	4.850

※ 유의사항

* 최근 불승인·감액 사례 : 관계사 매출 차감시 매출액한도 저축, 부채비율과다, EBITDA 이자보상배수 1 미만, 매출액 대비 차입금과다, 관계기업 대여금과다, 주력기업 부실 등

□ (산은·신보·기은) 회사채·CP 등 차환발행 지원

○ 매입대상

구분		회사채	CP	채안펀드	국책은행 차환·매입지원	회사채 신속인수	SPV
투자 등급	우량	AA	A1	●	●	-	●
	비우량	A	A2	제한적 매입	●	●	●
		BBB	A3	-	-	●	●
투기 등급	투기	BB	B	-	-	-	제한적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 않음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 매입기준 :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
 - * 투기등급(BB등급)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
 - **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 만기 : 회사채는 3년 이내, CP·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 이내

3 자동차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
 - 완성차 출연 재원(1,200억원)은 완성차업체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 정부 재정(1,500억원)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 대상으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가능

구분	'중견기업'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한도(억원)
①	신/기보 일반보증 + 보증재단 보증 + 본 특례보증	70
②	① + 신/기보 투자금액	100
③	② + 신/기보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	350

②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 자제, 만기연장을 지원해드립니다.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 (산은·수은·기보) '21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시행
※ 온렌딩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포함 (중개금융기관으로 신청)
- (5대 시중은행) '20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시행
 -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우선 시행 후 추가 확대 검토
- (신보·기보) '21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소 대출보중에 대해 신청시 상환없이 원금 만기연장 지원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 (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①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거납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입국검역 강화에 따라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전수 격리된 대상으로 입국검역 강화 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지원기준) 근로자별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 ①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명서'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사업장 통장사본

* 신청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6만원(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목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일반 업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중견기업	50%(1/2)	67%(2/3)	67%(2/3)	50~67%(1/2~2/3)

- (요건 완화)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나, 이번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

* 예외적 신규채용 허용 :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10%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고용유지지원제도 세부 내용 참고 2, 3, 4, 5, 6 >

③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에 유연근무제 활용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합니다.

- (심사절차)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대상)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완화
- (재택근무)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참고 7 >

④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당 5만원, 최대 20일간(부부합산 최대 15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1.20.(국내 첫 CV19 확진판정일)부터 '20.12.31.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등
-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20일 지원
-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견기업 대상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③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⑥ (위라벨일자리지원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최대 1년)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근속기간 6개월이상 → 1개월 이상
- (적용기간) 2020.3.1~12.31.(10개월) 단축근무자 한시 적용
- (지원요건) ①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모든 기업	15~25시간: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40만원	15~25시간: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모든 기업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 제출
-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근로시간 단축제도 참고 8 >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 개선 및 구직자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견기업 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기간) ~ 2020. 12. 31.

○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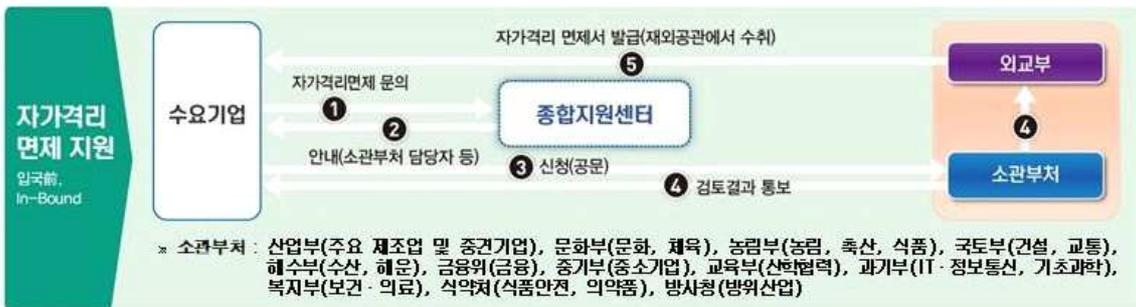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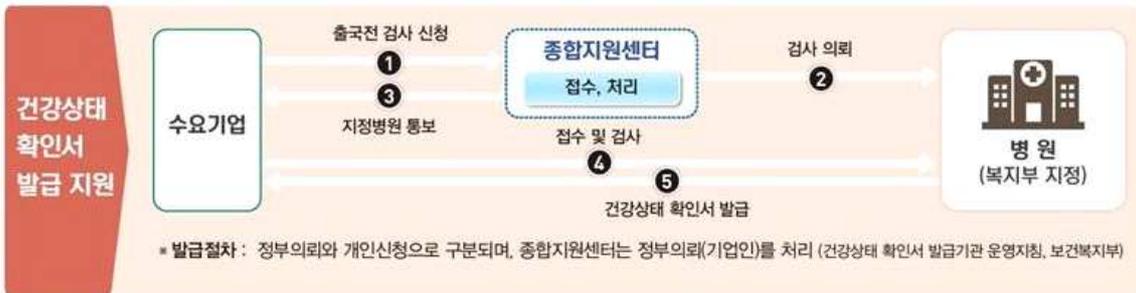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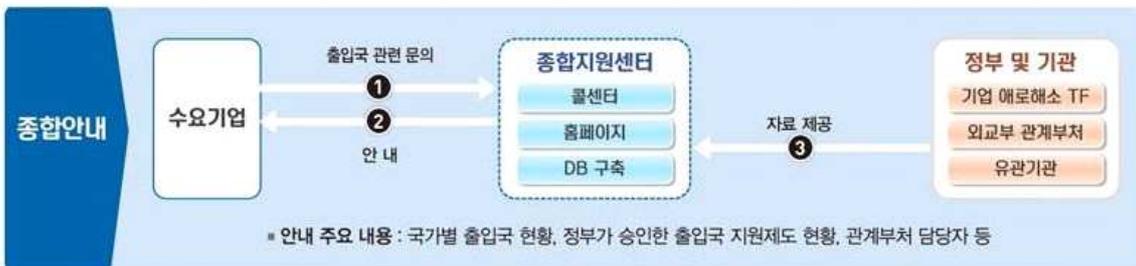
○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3

수출분야

① (출입국지원)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
- (지원내용) 국가별 기업인 출입국 종합안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격리면제 관련절차, 기업인 출국 시 전세기 지원 등



② (화상상담회) 해외출장 없이도 신규바이어 발굴 및 기존바이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KOTRA 지방지원단 및 해외 중점무역관에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확대하여 해외바이어와 화상상담 진행 지원

- 신청기업별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토대로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1:1 화상상담* 주선

* 1:1 화상상담은 코트라의 사이버무역상담실과 지방지원단 사무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무실·자택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통역지원까지 무료로 지원

○ (지원방법) KOTRA 본부 및 13개 지방지원단을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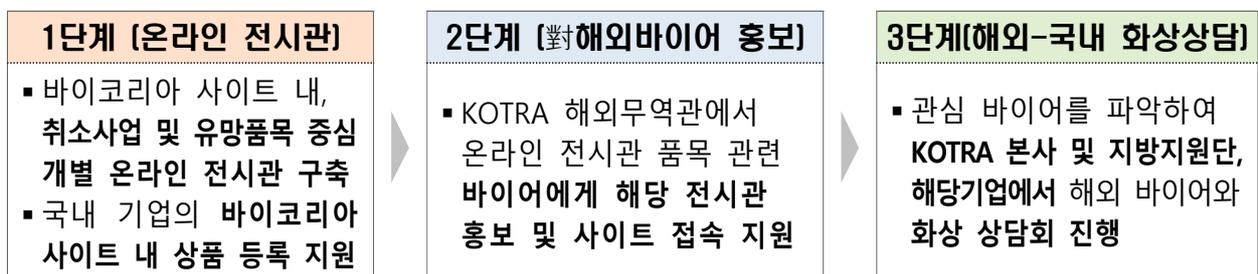
③ (온라인전시관 신설)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취소된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및 유망품목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Buy KOREA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합니다.

○ (지원내용) 유망품목별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하여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관심이 높은 바이어는 국내기업과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진해 수출계약 성사 지원

*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개관 (섬유<9월>, 전자·스마트홈·바이오<10~11월>, 기계·화학·신재생·로봇·자동차·조선<12월~>) : 바이코리아(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 등 연동 → 실시간 상담·결제·배송 가능

** 전략시장별 온라인 특별 상품전 확대 : (현재) 중국, 동남아, 일본, CIS, 서남아 → (확대) 중남미, 북미, 중동·아프리카, 유럽

○ (추진단계)



4] (긴급지사화서비스) CV19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인하여 해외 현지 마케팅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위해 KOTRA무역관에서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대면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에 KOTRA 현지 무역관 전담직원을 긴급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점검 등

[현지 마케팅 대행 확대 내용]

구분	기존	확대(기존+긴급 마케팅 대행 추가)
지원내용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 통관 자문, 출장 대행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현지 법인설립 지원	
가입기간	1달 이상	즉시 가입
서비스기간	1년	3개월(필요시 분기별 연장)
참가비	300만원(지역별 차등)	75만원(지역 상관 無)

○ (지원대상) 홍콩,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해외 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수행기간) 3개월, 필요시 분기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기간) 3.2(월)~

< 지원 절차 >

- ① 신청접수 : KOTRA 유망기업팀 신청서 접수
- ② 지원대상 선정 : 해외무역관의 실제 지원가능여부 판단(2~3일 소요)
- ③ 협약체결 : 해당 무역관 - 신청기업 간 협약 체결
- ④ 참가비 납부 : 기한 내 참가비(75만원) 계좌이체 혹은 카드 결제
- ⑤ 사업개시 및 활동 : 협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

○ (신청방법) KOTRA 유망기업팀(moouuk@kotra.or.kr) 메일 신청

○ (관련문의) KOTRA 유망기업팀(02-3460-7438)

⑤ (무역금융)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 제작자금 대출 보증, 운전자금 등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해드립니다.

1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주력시장* 소재 수입자 앞 무신용장 거래와 관련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대상기업	단기수출보험 이용 수출기업
적용기간	'20년말까지

* 총 33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문의 : 고객센터 (☎ 1588-3884)

2 해외법인 운전자금 보증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대상기업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
대상요건	-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 필수 - 공사 및 대출은행이 정한 신용등급 충족 필요
대출한도	5백만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기관의 사업성검토 보고서 제출시 최대 1백억원)
대출기간	3년 이내
상환구조	원금균등 분할상환
운영기간	'20.12.31까지

□ 신청 : 현지 대출취급은행과 상담 (해외사업금융보험 담보부 대출 가능여부 확인)

□ 문의 : 플랜트금융1부 (☎ 02-399-7026, 6954)

3 선적전 보증 만기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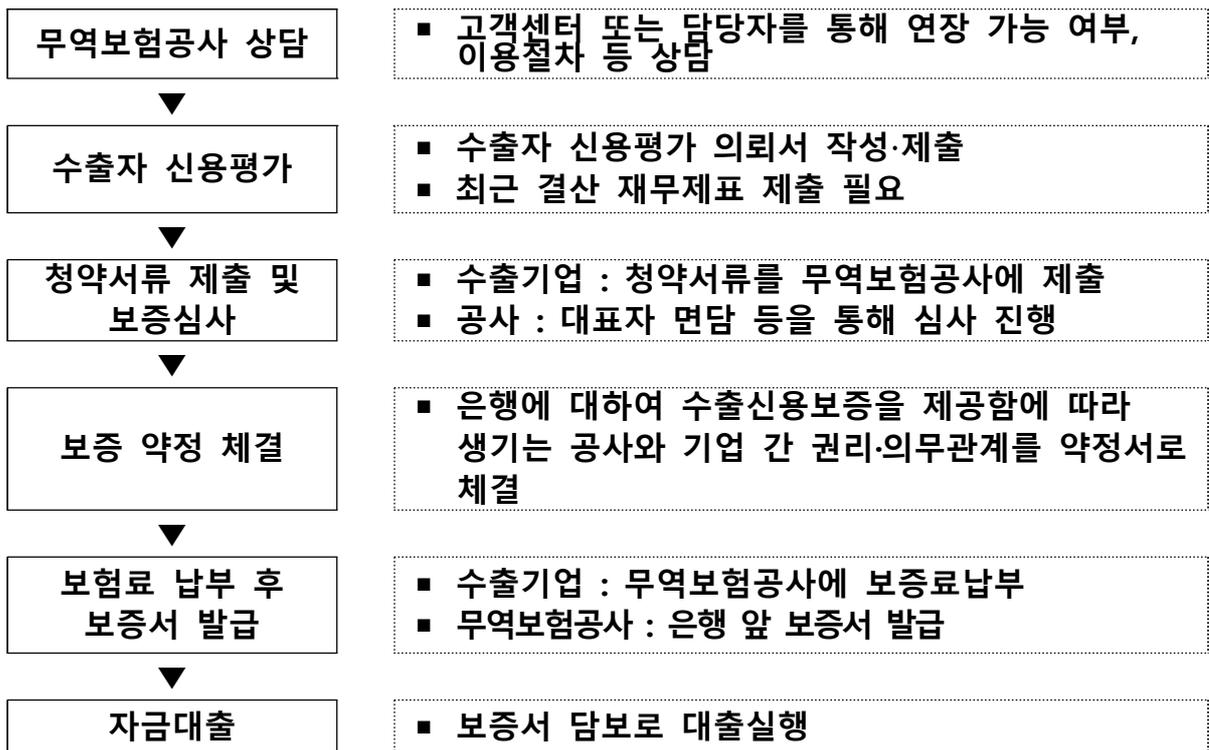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책정 시 무감액 연장 처리
대상기업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를 보유한 모든 기업
자금용도	수출계약이행을 위한 운전자금
보증요율	연간 0.6% ~ 2.0% 내외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영업기획팀 ☎ 02-399-6830)

4 보험·보증료 50% 할인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대상기업	수출 중소·중견 기업
할인율*	50%**
적용기간	'20.4.15~'20.12.31

*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정하는 할인율과 경합하는 경우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 하되 중복적용은 배제

**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수출기업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 없도록 추진

□ 할인대상 종목 및 할인율 적용 기준일

종 목	할인율 기준일	할인율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농수산물패키지 제외)	선적일	50%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매입)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Nego)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예정일	
수출신용보증(공급망)	대출실행일	

□ 문의 : 영업기획팀(☎ 02-399-6784)

5 긴급 수출안정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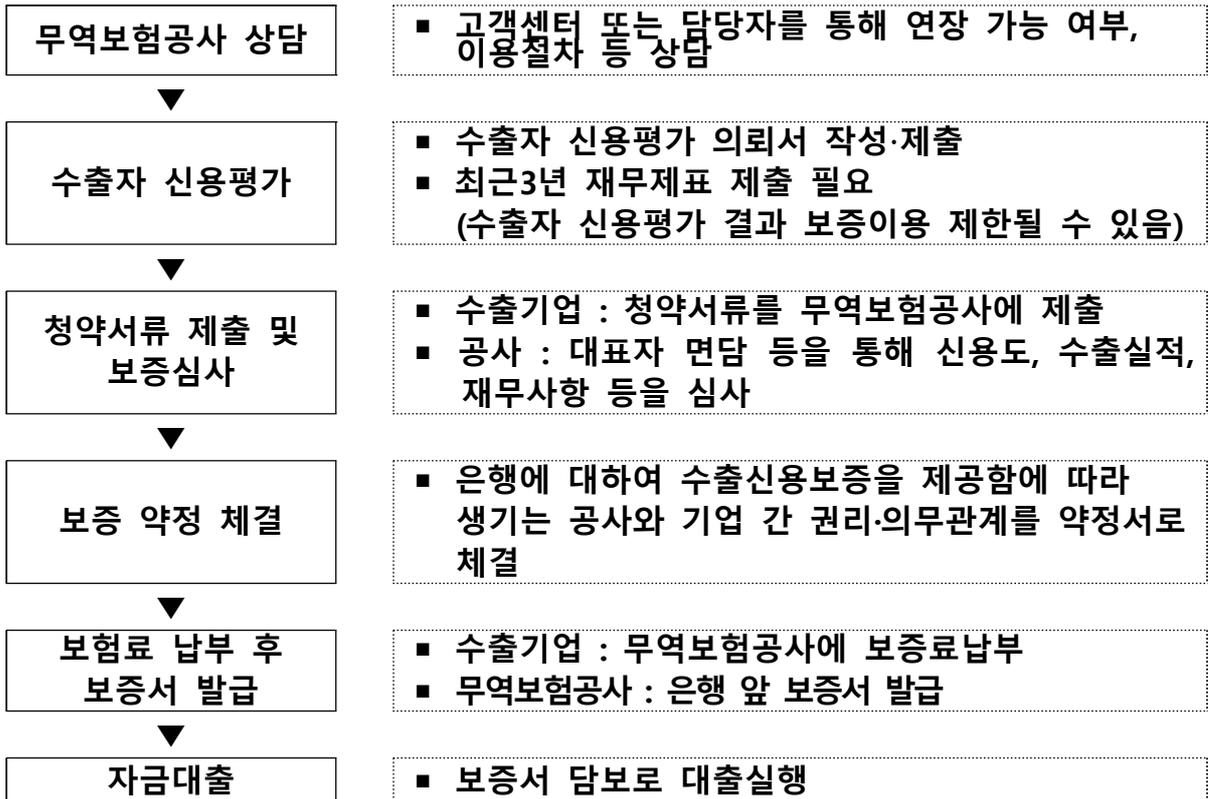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간편·신속 심사를 통한 무역금융 신속 지원 (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대상기업	수출실적(또는 수출계약) 보유한 중소기업
자금용도	수출계약이행을 위한 운전자금
보증요율	연간 0.6% ~ 2.0% 내외 -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영업기획팀 ☎ 02-399-6830)

6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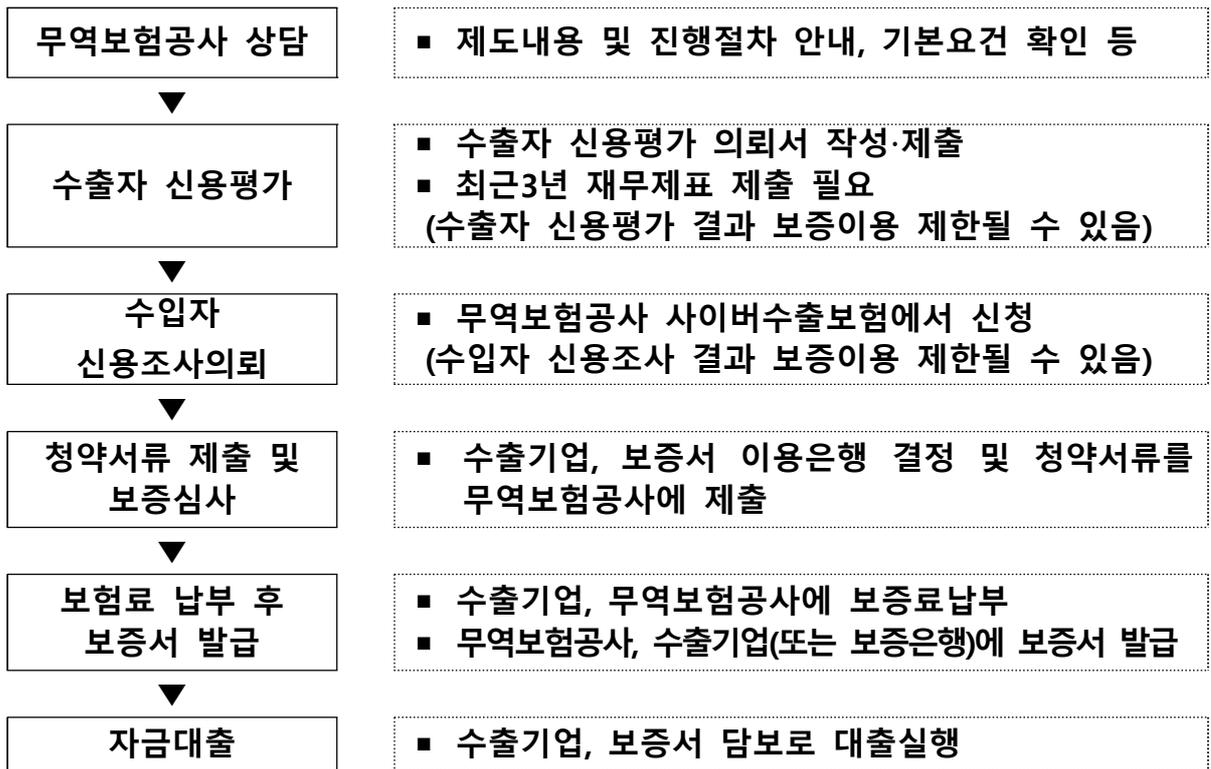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외상수출 이행 후 대금결제 이전에 미리 수출채권을 조기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외환 대출용 보증서 제공
대상기업	수출실적(또는 수출계약) 보유한 중소기업
보증한도	수출·입자 신용도,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등 감안하여 책정
보증요율	연간 약 0.4%~0.7% (특별할인 적용시) 내외 -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영업기획팀 ☎ 02-399-6951

7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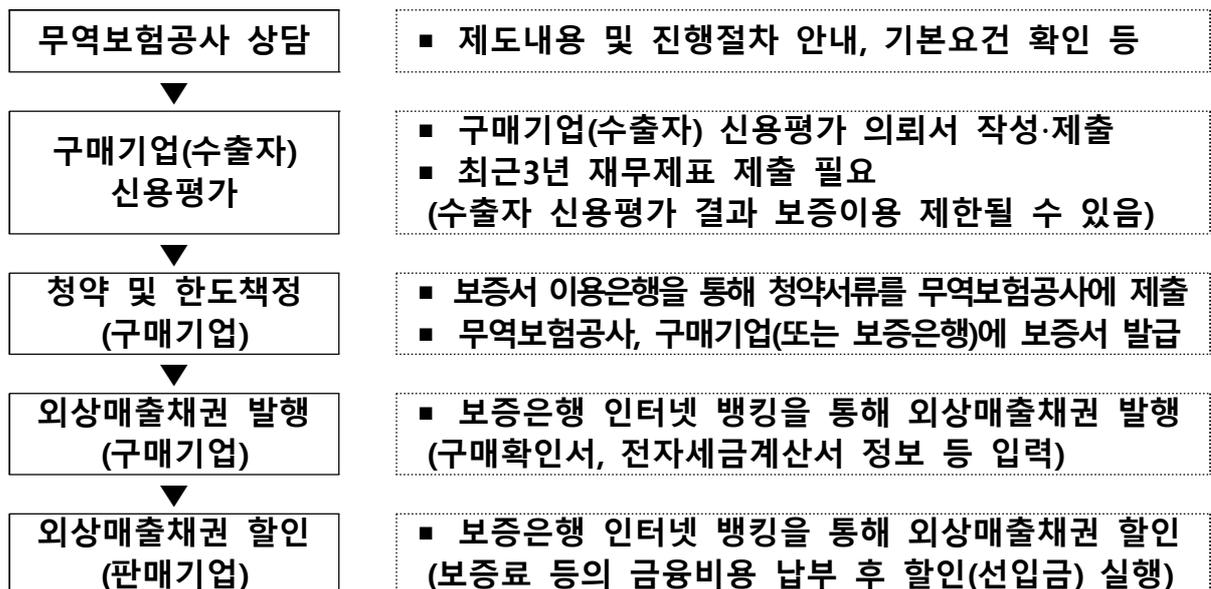
□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외상 판매한 기업이 은행을 통해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수출용 원·부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구매기업
지원대상	판매기업(은행에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할인)
대상거래	결제기일 90일 이내 구매확인서 발급 거래
보증요율	연간 약 0.02%~0.07% (특별할인 50% 적용시) 내외 - 구매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공급망 보증 비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비 공급망 보증은 KNET을 통한 매출채권 정보 공유, 외상기간 단축(180→90일), 비소구 조건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영업기획팀 ☎ 02-399-6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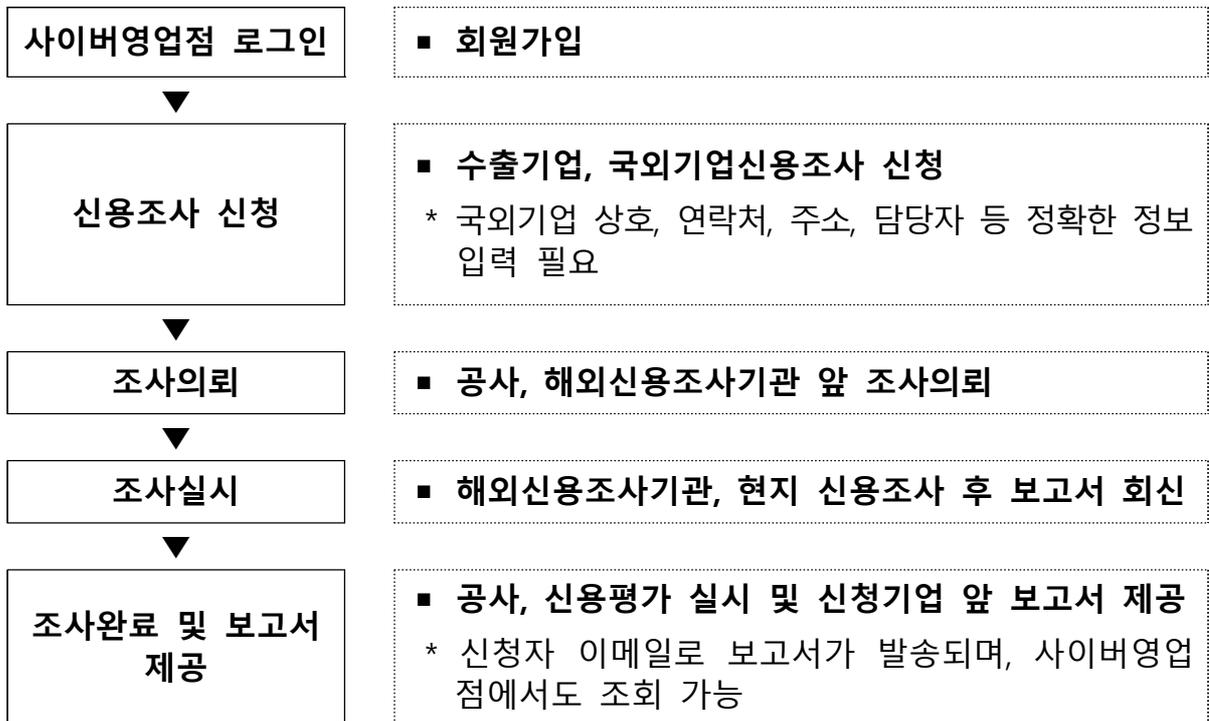
8 中企 신용조사 무료제공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대상기업	수출 중소기업
지원건수	5건
적용기간	'20.04.09 ~ '20.12.31(신청일 기준)

□ 신청방법

- (신청절차) 공사 사이버영업점(cyber.ksure.or.kr)에 접속하여 신청



- (문의처) 조사부 신용평가팀(☎ 02-399-6898)

9 특레인수위원회를 통한 특별지원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레인수위원회*를 통해 수출자금 및 이행보증 특별지원 * 외부위원(금융·회계·학계·법률 등 전문가)으로 구성 - 지원가능한도를 소진한 기업에 추가 자금 지원 - 신용도가 낮아서 지원이 제한된 기업에 특별 자금 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및 수출초보/급증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품목 업종 영위 기업 - 신용도가 낮아서* 정상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도 포함 *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불량, 자본잠식, 감사의견 한정 등으로 인한 지원이 제한된 등급
대상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0억원 이내 ■ 수출보증보험 U\$15백만 이내

□ 신청·문의 : 각 영업점을 통해 별도상담 요망

4

세무분야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행정예 편의를 지원해드립니다.

1 국세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 대상 : ①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②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③매출급감 등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

□ 세무조사 유예 등

-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운영

-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지원

2 지방세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까지 유예

* 대상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세무조사 유예 등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5**해운항만분야**

① (화물운송)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화물선사의 유동성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자금 총 900억 원 규모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긴급경영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정기, 부정기)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업체당 최대 5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 (운항 인센티브 제공)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 제공
 - 개별 선사의 부산항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 배분
-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연장) 당초 '20.3월말까지였던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기한을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연장

② (항만운영)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 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10~50%) 하고 항만공사 운영 상생펀드를 확대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임대료·사용료 감면)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임대료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8월까지 10% 또는 정액을 감면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8월까지 임대료의 10%를 감면
- (상생펀드 지원)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 지원

□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내림을 안내해드립니다.

- (내용) 국토교통부는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 감안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 (적용조건)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건설공사가 중단된 경우
- (적용내용)
 -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 요구 가능
 - * 민간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변경된 공기, 변동된 자재 가격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 조정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 변경
 - 공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 불가
 - 완공 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 연장
- (기타)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분쟁 중재 예정

참고1

시중은행 피해기업 지원 내용

은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농협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61-3000
신한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1577-8000
우리 (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 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1588-5000
하나 (2.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588-1111
국민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4,600억원) 	1588-9999
대구 (2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1566-5050
부산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6200
광주 (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 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600-4000
제주 (1.3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1588-0079
전북 (2.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4477
경남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00-8585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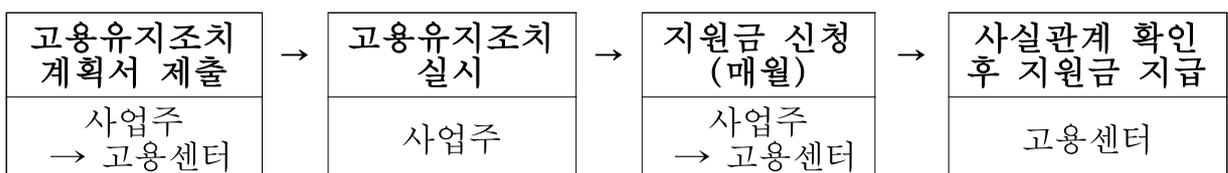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9.30.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신청)절차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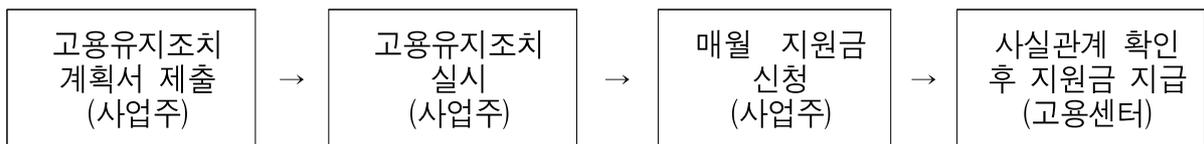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3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1/2~9/10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2~9/10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참고4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9/10 지원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1>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4.27.부터 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 4.27.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27.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규 채용을 허용합니다.
- 다만,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 지급 제한(1년) ·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6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① 무급휴업	사전요건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업 사유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좌동	해당없음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좌동	해당없음			
	근로자대표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좌동	해당없음			
실시요건	최소 실시 인원	구분	최소 실시 인원	좌동	해당없음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기간	30일 이상 실시	좌동	해당없음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② 무급휴직	사전요건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직 사유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준</td> <td>기준달 감소 기준</td> </tr> <tr> <td rowspan="2">재고</td> <td>직전년도</td> <td>50% 이상 ↑</td> </tr> <tr> <td>직전 2분기</td> <td>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 rowspan="2">생산</td> <td>직전년도월평균</td> <td rowspan="2">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 rowspan="3">매출</td> <td>직전 3개월</td> <td rowspan="3">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직전년도월평균</td> </tr> <tr> <td>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직전 3개월</td> <td rowspan="2">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직전 2분기</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td> </tr> </table>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좌동	좌동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실시	<p>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p> <p>*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p>	<p>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p> <p>*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p>	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근로자 대표 합의	<p>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합의</p> <p>*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p>	좌동	좌동																									
최소 실시 인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최소 실시 인원</td> </tr> <tr> <td>99명 이하</td> <td>10명 이상</td> </tr> <tr> <td>100~999명</td> <td>10% 이상</td> </tr> <tr> <td>1,000명 이상</td> <td>100명 이상</td> </tr> </table> <p>* 10인미만 사업장 제외</p>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좌동	좌동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기간	90일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③ 공 통 사 항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 * 사전요건 확인자료 함께 제출 (예외)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업안정 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좌동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7일 전 (예외)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 업안정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제출내용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휴 업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기준, 실시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업무복귀 기 준 및 복귀 예정일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 력개발·향상계획* <필수> * 내용, 기간, 대상자, 비용 등	좌동	좌동
	지원금 신청·지급	신청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 음달 5일까지 신청	좌동	좌동
		공제	(사업주)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결 정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신청	좌동	좌동
		지급	(센터)피보험자 지정 금융기관 직접 입금	좌동	좌동
	기타	지원일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	좌동	①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 일에서 특례지원은 최대 90일 한도
		반려사유	① 시행령 요건 미달 ② 3년이상 같은달 고용유지실시 ③ 고용보험료 체납 ④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 체불 ⑤ 보완 요구 사항 기한내 미제출	좌동	좌동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지원금 상한액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일 상한액: 6.6만원	좌동	'20.9.15.까지 한시 적용 1인당 150만원 한도(월 최대 50만원)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좌동	좌동								
	지급제외자	①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③경영상 이유에 따라 권고퇴직이 예정된 자	좌동	①~③ 좌동 ④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⑤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고 있는 경우 ⑥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지급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제한</th> </tr> </thead> <tbody> <tr> <td>계획 초과 이행</td> <td>계획에 따라 지급</td> </tr> <tr> <td>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td> <td>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td> </tr> <tr> <td>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td> <td>전부 부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좌동	좌동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참고7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참고8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제도 의의

- 국정과제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 (시행시기) '20년 300인↑·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30인 미만

□ 주요 내용

- (신청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 육아는 제외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하기 때문)

- (거부 사유) ①근속기간 6개월 미만, ②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③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④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단축기간) 1년 + 2년 연장(총 단축 3년, 연장은 1회만 가능, 학업 제외*)

* 학업 사유는 총 단축기간 1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근로 조건)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직무 복귀, 시간 비례적용 외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축 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

단축 사유	활용	기대 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 가족친화문화 조성,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 업무 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방지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 점진적 퇴직, 인생 3모작 준비
학업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 취득	⇒ 평생학습 보장, 업무 생산성 향상